

성남미디어센터 운영규정

제 정 2012. 11.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영리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성남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미디어센터"란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와 지역 미디어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하 "사용")이란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의 시설 및 장비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정회원"이란 회원가입 신청을 한 사람 중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센터의 별도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명칭) 센터의 명칭은 “성남미디어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장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둔다.

1. 교육공간 : 디지털교육실 1, 디지털교육실 2, 일반강의실
2. 제작공간 : 다목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 미디어공방
3.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미디어홀)
4. 주민공간 : 미디어도서관, 갤러리, 동아리방 1, 동아리방 2
5. 부속설비 : 위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6. 장 비 : 센터 보유 장비

② 센터의 시설·장비는 시민들에게 개방·제공된다. 단, 일부 시설 및 장비에 한해서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을 위한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2.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미디어 문화 프로그램 제공



3. 센터 장비의 대여, 스튜디오 시설 제공
4. 우수 영상물 감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지역의 미디어 문화 활동 및 제작활동 지원
6. 그 밖에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해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방향, 평가 및 운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 및 기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변동시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이사장이 정한다.

② 사용시간 구분 및 사용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특례)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센터가 외부 기관과 맺은 업무협력에 의해 진행하거나, 공동 주최 또는 후원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4. 정회원이 시설을 대관할 경우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중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종교의 포교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운영방향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세부운영지침) 센터 운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